

I. 국민제안

1. 공공정보 통합 연계 기능 개선으로 더 편리한 지도서비스 구현

제안명	공공정보 통합 연계 기능 개선으로 더 편리한 지도서비스 구현
실시 담당자	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(담당자: 정승균 연락처: 044-201-3489)
실시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중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실시 예정 (예정일: '27년 1월)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미정
추진시기	제안일: '26년 1월 4일 / 채택일: '26년 4월 23일 / 실시일: '27년 1월 1일
접수경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국민신문고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 제안플랫폼 (명칭: 0000)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통령실 국민제안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국민에게 필요한 토지·건축·규제 등 관련 정보가 산재*되어 있어 접근성이 저하되고 필요 시 즉각적인 확인 및 반복적인 행정절차로 국민 민원**증가
 - * 토지대장, 건축물대장(정부24), 토지이용계획(토지이음) 등 서비스별로 별도 조회 中
 - ** 공공·민간·개인 간 토지·건축물 소유권 분쟁, 불법 주·정차 무단점유 및 통행분쟁 등

□ 제안내용 (개선방안)

- (제안) 브이월드에 공공정보 연계를 통해 하여 지도서비스에 시각화하여 해당 필지(구역)를 클릭할 시 소유자 정보* 등을 비식별화된 형태로 제공 제안
 - * 토지대장 정보의 조회·확인은 브이월드의 '공장 인허가 분석'을 통해 서비스 제공 중('25~)
- (개선) 토지·건축·규제정보 등을 자연어 기반으로 통합 조회하고, 사용자 목적에 맞는 데이터·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서비스 고도화 예정

AS - IS	⇒	TO - BE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토지·건축·규제 정보를 정부24, 토지이음 등 개별조회로 이·활용 불편 ·공간분석 기능을 확대했으나 복잡한 기능 구조과정으로 활용 난이도 증가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자연어 질의를 통해 토지·건축·규제 등 복합 공간정보를 통합 조회 서비스 제공 ·AI 분석·검색 기능을 통해 공간정보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석 생산성 향상

□ 기대효과

- (정량적) 산재된 공공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사용자의 정보 탐색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정보 접근성 향상을 통한 비전문가의 공간정보 활용 저변 확대
- (정성적) 토지·건축물 소유권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민원과 분쟁을 축소하고 지자체·경찰·공공기관 등의 신속한 행정조치로 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

□ 실시계획

- (시범 적용) AI 기반 공간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('27.1월~)

2.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개선으로 전국 원스톱 행정 구현

제안명	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개선으로 전국 원스톱 행정 구현
실시 담당자	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(담당자: 조지현 연락처: 044-201-4653)
실시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중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실시 예정 (예정일: '27년 1월)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미정
추진시기	제안일: '26년 1월 12일 / 채택일: '26년 5월 11일 / 실시일: '27년 1월
접수경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국민신문고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 제안플랫폼 (명칭: 0000)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통령실 국민제안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현재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는 지번(도로명주소)입력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의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함
 - 적용 지역: 전국 17개 시도(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, 경기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)
- 문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 상에서 해당 지번이 '숫자 동그라미'로만 표시되어 국민들이 해당 토지의 경계, 형태, 면적을 직관적으로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임
- 또한 현행 열람 화면은 지도 이동·확대·축소가 불가능한 정적(1차원)인 화면으로, 토지정보의 이해도 및 활용도에 한계가 존재함

□ 제안내용 (개선방안)

- 일사편리 부동산통합열람 화면에서 토지이용계획 조회 시 토지e음 이음지도 바로 가기 기능 추가 개선 요청

□ 기대효과

- 토지의 경계·형태·면적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국민 중심의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
- 기존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추가 예산(재정) 부담 없이 전국적인 원스톱 행정 구현
- 토지이용계획 정보의 가독성 및 식별성 강화로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이해도 향상

□ 실시계획

- 차세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 3차 사업시 기능 개발을 통해 2027년 1월 경 토지e음 이음지도와 연계 예정

3.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해석 기준 명확화로 실무혼선 방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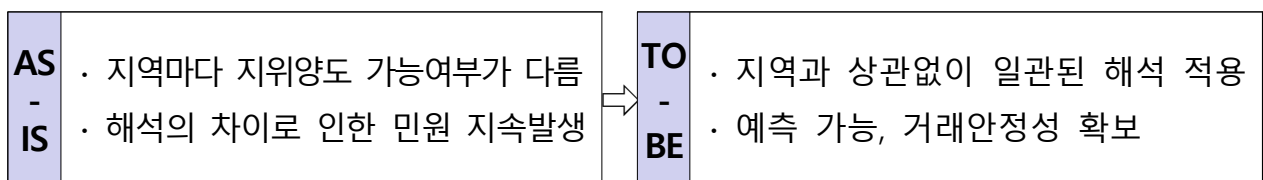
제안명	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해석 기준 명확화로 실무혼선 방지
실시 담당자	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 (담당자: 정희승 연락처: 044-201-3390)
실시여부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실시 중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예정 (예정일: '2x년 x월)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미정
추진시기	제안일: '2026년 4월 21일 / 채택일: '2026년 4월 27일 / 실시일: '2026년 4월 27일
접수경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국민신문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자체 제안플랫폼 (명칭: 2026 국토교통 정책제안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)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통령실 국민제안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(현황)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,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, 예외 인정 사항은 법률로 규정(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)
 - 이 중 사업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·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위양도가 가능(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3호)
- (문제점) 지자체별로 정비사업이 완료 이전 일부 사용허가(부분준공)가 상기 '준공'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상이
 - '준공'의 범위에 '부분준공'이 포함될 경우, 일부사용허가를 승인한 사업장은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, 지역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여부가 다르게 적용되는 실무적 혼선 발생

□ 제안내용 (개선방안)

- '준공'은 도시정비법 제83조에 의한 준공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명확화 하고 지자체 상이한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 해석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



□ 기대효과

-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'준공(사용승인)' 기준에 대한 해석 혼선을 해소하고, 통일된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 및 행정 신뢰성을 제고
- 주택거래의 예측성 향상, 재산권을 보호 및 민원 감소 등의 효과 발생

□ 실시내용(심사결과)

- **(국토부의 의견)**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3호에서 말하는 '준공'이란 도시정비법 제83조에서 규정한 정비사업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인가를 의미
- **(제안채택사유)** "준공"에 "부분준공"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(민원)가 많으며, 사업을 시행하는 각 지자체별로 해석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관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제안인의 지적에 공감
 -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는 착공 이후 사업이 일정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
 - '부분준공'을 포함하여 '준공'을 해석하여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
- **(실시내용)** 관련 법령해석에 대하여 우리부에서 법제처에 제출하였던 법령 해석 의견제출 문서(주택정비과-3203, 2024.5.14.)를 전국 지자체에 배포
 - 도시정비법 질의회신 공개 알림 문서시행(주택정비정책과-3426, 2026.4.27.)



국토교통부

국 토 교 통 부

수신 법제처장(법령해석총괄과장)

(경유)

제목 법령해석 안건(안건번호 24-0143) 관련 의견 제출

1. 평소 우리 부의 국토교통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리며, 법제처 경제법령해석1과-87(2024. 3. 14.)호와 관련됩니다.

2. 귀 기관에서 법령해석 안건(안건번호 24-0143)과 관련하여 의견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.

○ (질의)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"도시정비법")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'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'(이하 "부분준공인가")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른 '준공'에 해당되는지?

○ (의견)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, 양도인이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·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,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도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한편,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르면, 시장·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·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,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에서 말하는 '준공'이란 도시정비법 제83조에서 규정한 정비사업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

아울러,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는 착공 이후 사업이 일정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인 점을 고려할 때, 동 규정상 '준공'을 '부분준공'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 끝.

4. 실거래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

제안명	실거래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
실시 담당자	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(담당자: 이영주 연락처: 044-201-3402)
실시여부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실시 중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예정 (예정일: '2x년 x월)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미정
추진시기	제안일: '25년 6월 11일 / 채택일: '26년 3월 14일 / 실시일: '26년 2월 10일
접수경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국민신문고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 제안플랫폼 (명칭: 0000)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통령실 국민제안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국토부의 실거래가 기재에 대한 문제 제기
 -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전산 등록만 하는 것이 가능하며, 중개업자나 이해당사자 끼리 허위 계약 후에 해약을 할 경우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고, 증여에 따른 가족 간의 거래는 명확하게 확인이 불가능 등

□ 제안내용 (개선방안)

- 실거래가 된 부분의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그에 따른 증빙을 통한 기간을 두고, 계약의무 이행시에 되는 잔금처리일 기준 하에 처리하면 될 듯함
 - 대출에 따른 추후 처리일은 대출거래약정서 및 은행 실행인지에 따른 일자 기재를 통하여 진행
 - 대부분 은행대출 실행은 대출거래약정 이후 진행하므로 은행에서 주담대 및 전세대출 리스트를 업로드하여 분기별 확인 가능

□ 기대효과

- 실거래의 정확한 이체내역으로 허위거래가 줄어들 예정이며,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허위조작 추출이 가능하고, 실거래가로 인하여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바로 잡힘
- 중개인들과 중개업소의 바른 거래질서 확립화 및 허위 증여 감소 등

□ 실시계획

- 기존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「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」을 개정 완료('26.2.6 개정, 2.10 시행)

AS - IS	·부동산 거래계약을 단독으로 신고할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및 단독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	⇒	TO - BE	·부동산 거래계약을 단독으로 신고할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및 단독 신고서에 더해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 제출 ·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시에도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 제출
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

5. 철도역 주차장 요금체계 개선으로 국민 편익 증진

분야 구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일반제안 <input type="checkbox"/> 협업제안
제안명	철도역 주차장 요금체계 개선으로 국민 편익 증진
실시 담당자	국가철도공단 총청본부 경영지원처 (담당자: 윤여종 연락처: 042-607-5084)
실시여부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실시 중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예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미정
추진시기	제안일: '25년 7월 24일 / 채택일: '25년 7월 24일 / 실시일: '26년 4월 22일
접수경로	<input type="checkbox"/> 국민신문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자체 제안플랫폼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통령실 국민제안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**(현 황)** 철도이용객 급증에 따른 역사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민간 주차장 조성 및 사용허가 추진 중
- **(문제점)** 민간 주차장은 역사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주차장 보다 과도한 요금을 책정하여 철도이용객의 경제적 부담 및 불만 초래
 - * 오송역 민간 주차장 일일요금은 인근 법정 주차장 대비 140% 수준(법정 10,000원/민간 14,000원)

□ 제안내용

- **(개선방안)** 민간 주차장 요금 징수기준 명문화 및 상시 통제 체계 구축을 통한 불합리한 요금 격차 해소
 - **(적용대상)** 사용허가 종료(재입찰) 및 신규 입찰 대상 민간 주차장
 - **(사전:제도 마련)** 국유재산 사용자 선정 입찰공고문 및 사용허가서에 '합리적 요금 징수 조건' 명시
 - **(사후:점검·제재)** 정기적인 요금 실태 모니터링 실시 및 징수조건 위반 적발 시 '사용허가 취소' 조치를 적용하여 제도 실효성 확보
 - * 오송역 E 주차장 신규 공개경쟁 입찰 시 반영 완료('26.4.), 사용자 선정 추진 중('26.6.)

□ 기대효과

- **(정 량)** 철도이용객 주차요금 연간 598백만원* 절감 (오송역 민간 주차장 1개소 기준)
 - ※ 절감액 산출식 : 4,000원(제도 개선 전·후 1일 요금 차액) x 410면(주차면수) x 365일
- **(정 성)** 입찰·허가 단계의 예방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고, 요금 형평성 확보 및 역사 주변 불법 주정차 감소를 통한 국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 달성

□ 실시계획

- 현재 입찰 중인 오송역 주차장을 표준 모델로 삼아 전국 철도역 인근 민간 주차장(31개소)에 제도 전면 확대 적용

6. 기다림은 줄이고! 궁금증은 한 번에! <철도보호지구 행정, 대국민 서비스 혁신>

제안명	기다림은 줄이고! 궁금증은 한 번에! <철도보호지구 행정, 대국민 서비스 혁신>
실시 담당자	국가철도공단 시설본부 시설계획처 (강성호 과장 / 042-607-4203)
실시여부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실시 중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예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미정
추진시기	제안일: '25년 8월 21일 / 채택일: '25년 8월 21일 / 실시일: '26년 3월 31일
접수경로	<input type="checkbox"/> 국민신문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자체 제안플랫폼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통령실 국민제안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**(현 황)** 철도보호지구(철도 경계선 30m 이내 구역)에 국민이 토지 형질변경, 굴착, 건축물 신·증축, 식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위 신고 및 점검을 받도록 규정
- **(문제점)** 행위 신고 시 유관기관 간 최소 9회 공문 발생으로 민원 처리 지연 및 접수 이후 진행 상황이 공유되지 않아 국민이 직접 문의·확인해야 하는 불편 초래
※ 연평균 행위신고 건수 : 2,136건(국민), 연평균 안전점검 건수 : 19,254건(공단)

□ 제안내용

- **(프로세스 혁신)** 기관 간 협의 과정을 공문 방식에서 철도종합정보시스템(RAFIS) 전산망 내 일괄 처리로 전환하여 기존 9회 생성 공문을 1회로 대폭 축소
- **(소통채널 혁신)** 시스템(RAFIS) 전산망과 연계하여 민원 접수부터 수리까지 전 과정을 국민에게 SMS(알림톡)으로 실시간 자동 안내
- **(디지털 정부)** 별도의 로그인 없이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AI 챗봇을 공단 홈페이지에 도입하여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스마트 행정 구현

□ 기대효과

- **(정 량)** 기관 간 관행적 공문 발생량 88.9% 감축 (19,224건 → 2,136건, △17,088건)으로 불필요한 행정 비용 절감 및 신속한 민원 처리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
- **(정 성)** 24시간 AI 챗봇 응대로 국민 민원 대기시간 완전 해소, 알림톡을 통한 실시간 진행 상황 공유로 국민 알권리 보장 및 행정 투명성 극대화

□ 실시계획

- '26. 3. 3. : RAFIS 전산화 및 알림톡 서비스 구축 완료
- '26. 3. 31. : AI 챗봇을 공단 홈페이지와 연계 및 대국민 서비스 개시

7. 철도시설기여금 면제 및 참여요건 완화로 비수도권 개발사업 활성화

분야 구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일반제안 <input type="checkbox"/> 협업제안
제안명	철도시설기여금 면제 및 참여요건 완화로 비수도권 개발사업 활성화
실시 담당자	국가철도공단 글로벌개발처 국내개발기획부 (담당자: 엄강현 연락처: 042-607-4223)
실시여부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실시 중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예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미정
추진시기	제안일: '26년 4월 7일 / 채택일: '26년 5월 28일 / 실시일: '26년 6월 ~
접수경로	<input type="checkbox"/> 국민신문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자체 제안플랫폼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철도자산 개발을 추진 중이나, 사업 단계(착공)에 도달한 사례가 없으며, 대다수가 유찰되거나 자금조달 실패로 협약 해지
- 담보가 불가능한 국유지 점용허가 방식은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며, 특히 총공사비의 5% '철도시설 기여금'은 개발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중임

□ 제안내용

- **(초기비용 감면)** 내부 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부과한 총공사비 5% 규모의 '철도시설 기여금'을 비수도권 철도자산 개발사업에 한하여 전액 면제 추진
- **(사업요건 완화)** 중소 시행사의 개발사업 진입 및 지방 투자 유인을 위해 사업 주관자 자격요건인 납입자본금 최소 기준 완화 (30억원 → 20억원, 약 33% 하향)

□ 기대효과

- **(지역 균형발전)** 투자 여건 개선으로 비수도권 개발을 촉진하고 방치된 국유자산 가치를 극대화하여 정부 '5극 3특' 균형성장 정책을 이행하는 실천적 성공 모델 제시

[부산진역 개발사업 기반 시나리오 비교, 총공사비 763.95억원 기준]

관 점	현상유지 (기여금 부과)	적극행정 (기여금 면제)	핵심 성과 및 기대효과
민간사업자 (시행·금융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8.2억원 부담 (공사비 5%) • 초기 비용으로 수익 저하 • PF 대출 승인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여금 0원 (전액 면제) • 비용 절감·손익분기 단축 • 사업성 향상→PF 조달 용이 	[지방 투자 유인책 마련] 중소 시행사의 진입 촉진, 사업 실행 가능성 확보
국가철도공단 (재정·자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속 유찰로 개발 지연 • 부지 방치로 가치 저평가 • 점용료·기여금 수익 '0원'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년 2.89억원 점용료 수입 • 고밀도 자산개발을 통한 국유재산 가치 극대화 	[안정적 장기 자원 확보] 50년간 총 144.5억 원의 안정적 자원 확보
국가·국민 (지역 상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수도권 투자 기피 심화 • 인구 감소·지역 쇠퇴 가속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설·운영 지방 고용 창출 • 복합공간으로 상권 활성화 	[국정과제 실천적 이행] 지역소멸에 선제 대응하고 국민 편의성, 지역 경제 진작

□ 실시계획

- '26. 6월 ~ : '간현~판대' 유희부지 등 비수도권 철도자산 신규 사업주관자 공모 시 제도 즉각 적용 및 타 지역 전면 확대 시행

Ⅱ. 공무원제안

1.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제안

분야 구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일반제안 <input type="checkbox"/> 협업제안
제안명	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제안
실시 담당자	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(담당자 : 김선만 연락처: 044-201-4592)
실시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중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실시 예정 (예정일: '26년 8월)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미정
추진시기	제안일: '26년 5월 13일 / 채택일: '26년 5월 21일 / 실시일: '26년 8월 中
접수경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국민신문고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 제안플랫폼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통령실 국민제안

현황 및 문제점

- 「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」에는 1개월의 기간을 22일로 산정
- 고용노동부가 매년 공표하는 20.3일(2026년 기준)과의 차이가 있음

제안내용

- 노임 통계 기준과 대가 산정 기준의 일관성 확보
- 1개월 건설사업관리일수는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통계법」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협회가 조사 공표하는 1개월 근무일수로 산정 제안

기대효과

- 직접인건비 관련 부분 예산 절감 효과 기대 및 정산
- 건설현장에서 법정 공휴일 등을 제외한 실 근무일을 기준으로 대가 지급 가능
- 1개월 근무 일수를 동일화 하여 발주청과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간 직접인건비 정산 등의 혼란 방지

향후계획

- 우리부에서는 「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」 개정을 통해 제안내용에 대한 입안을 완료하고 자구 검토 중이며, 7월중 행정예고 예정